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안내자료

2017. 10.

교 육 부

CONTENTS

제1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 1

1. 배경 및 필요성 ····· 3
2. 추진 경과 ····· 4
3. 현황 및 문제점 ····· 6
4. 목표 및 과제 ····· 9
5. 과제별 세부추진 내용 ····· 10
6. 향후 추진일정 ····· 22
7. 관계부처 협조사항 ····· 23
8. 시·도교육청 추진 협조사항 ····· 24

제2부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절차 및 서식(안) / 25

1.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3월) ····· 28
2. 실습기업 발굴 및 사전 답사(3~8월) ····· 30
3. 실습기업 직무분석 및 산업체별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3~8월) ····· 36
4.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계획 설명 및 희망학생 모집 ····· 48
5. 실습기업-학생 매칭 ····· 48
6. 사전교육 실시 ····· 49
7. 학습 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 52
8. 학습 중심 현장실습 실시 ····· 54
9. 학습 중심 현장실습 종료 및 복귀 ····· 64
10. 현장실습 보고회 및 평가 실시 ····· 67

붙임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안) / 69

제1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 경과
3. 현황 및 문제점
4. 목표 및 과제
5. 과제별 세부추진 내용
6. 향후 추진일정
7. 관계부처 협조사항
8. 시·도교육청 추진 협조사항

제1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Ⅰ 배경 및 필요성

▣ **기술·기능인력 양성**의 **중추기관**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졸 취업률도 지속적 상승**

※ 직업계고 취업율 : ('10) 19.2% → ('12) 37.5% → ('14) 44.2% → ('16) 47.2%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역량 함양**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이론·지식교육** 뿐 아니라 **더 많은 현장실무능력 요구**

○ 현장성 높은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모델로 **마이스터고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확대**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15) 9교 → ('16) 60교 → ('17) 187교(학생 7천명 내외)

※ 마이스터고 : ('08) 9교 → ('09) 21교 → ('16) 48교(학생 5,600여명)

○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 NCS 교육과정 현황 : 교육과정 개정 고시('15.9.) → 전문교과 교과서 개발('16.~'17.9.) → 전문교과 실무과목(293개) 적용('17) → 전문교과 전과목(472개) 적용('18)

▣ 그동안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상존**

○ 현장실습과정에서 많은 **기업체는 학생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인권 침해** 등 문제 발생

※ 안전사고 발생, 권익 및 노동인권침해(임금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유해위험 업무 지시, 부당한 대우) 등

○ 학교현장에서는 현장실습 제도를 **학생의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보다는 근로에 중심을 두고 운영**

* 학생 희망과 상관없는 산업체 현장실습,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등

◘ 따라서,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개선**하고, **학생의 인권과 안전 보호에 역점**을 두는 방안 마련 필요

※ 국정과제 52-3 : 학생보호와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Ⅱ 추진 경과

▣ **전주 00고 현장실습 학생 자살사건 발생**('17. 1.)

○ 자살사건 관련 경찰 수사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17.3.~)

▣ 현장실습 개선방안 관련 의견수렴('17. 3. ~ 8.)

○ **국회 토론회**(이학원의원 3.24, 유은혜의원 6.26), **인권위 토론회**(6.13)

○ **교원단체**(교총 5.12), **인권네트워크**(6.14) 협의

○ **정책연구진 및 전문가 토론회**(4월~7월)

○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5.23~6.15), **취업부장**(5.25), **교장단**(6.7)

* 현장실습제도 개선 및 실시(15개 시도), 현장실습제도 폐지 또는 중단(2개 시도)

○ 현장실습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교육부-더불어민주당**, 7.28)

○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8.7, 8.9)

○ 교원단체(전교조, 교총)·현장교원·시도교육청 담당자·인권단체 등 참여 **전문가 토론회**(8.10, 8.22)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장단** 대표 협의회(8.17)

<주요 주장내용>

❖ **(점진 개선)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교현장 안정성 및 취업률 저하 방지**를 위해 점진적 개선

❖ **(현행 유지) 취업률 제고 등 성과**가 있고 **잘 정착된 제도**로서 특성화고 정체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현상 유지**

❖ **(전면 개편)** 산업체 **현장실습 우선 중단**, **교육과 취업 분리**, **취업률 경쟁 탈피**

< 그간의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책 및 한계 >

▣ 기존 개선방안(대책) 주요내용 및 성과

○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12.4.18)**

–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 강화(프로그램·인프라 지원 등),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 강화(근로계약 체결 등), 우수인재 양성 경로 개선

○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방안('13.8.26)**

–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직촉법 개정 등),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체제 구축

▣ 기존 대책의 성과 및 한계

[성과]

○ 현장실습을 통해서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학생보호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에 중점

○ 이를 계기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실습생의 근로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일정 성과**

[한계]

○ 산업체 현장실습의 **본질적인 한계(현장실습=취업) 개선에는 역부족**

– **취업률을 강조**함에 따라 **현장실습의 문제로 지적한 '노동력 제공' 측면은 여전히 존재**

– **노동시장으로 조기이행(긍정)과 교육과정의 부실운영(부정)이라는 양면성**이 존재나, 사건 발생 시마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됨

○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여건 미비**

– 학생–학교–기업의 실습 역량 제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 등을 강조**하였으나, 교육적인 처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함**

○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체제 구축 미흡**

– 현장실습은 학교 주도로 운영되나, **산업체와 학교가 공동의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공고화가 필요

Ⅲ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 현황

▣ 현장실습 개념/유형/시기

○ **(개념)**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 **(실습구분) 원칙적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

【현장실습 운영 구분】

구분	세부 활동 내용	실시 시기
교내 활동	◦ 창업 및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 전문가 초빙강의 등	1 ~ 3학년
교외 활동	◦ 공동실습소 위탁 교육 등	
	◦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	3학년 1학기 종료 후(2학기)

▣ 2016학년도 산업체 현장실습 현황

○ **(참여 학교·학생·기업수)** 학교 593교, 학생 60,016명, 기업 31,404개

학년도	학교수	현장실습 대상학생수(명)	참여학생수(명)	참여기업수(개)
2016*	593교	108,190명	60,016명	31,404개

* 교원의 산업체 방문지도 횟수 2회, 현장실습 학생 만족도 4.3/5점

○ **(월별 참여학생수)** 참여학생의 **96.2%는 2학기에 현장실습**에 참여, **58.3%는 3학년 수업일수 2/3 이수 후에 현장실습**에 참여

월	~7월	8~9월	10~11월	12월
학생수	2,367명(3.8%)	23,482명(37.9%)	26,390명(42.6%)	9,707명(15.7%)

2 문제점

▣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인한 운영 체계 부실

○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현장실습을 학습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인식

– **(기업)**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여 체계적 교육보다 **빠르게 업무현장에 투입**하여 **생산성 제고**에 관심

– **(학생)** 전공이나 적성보다는 **학업대체, 임금목적** 등을 위한 참여

※ 현장실습 중도탈락율('16, 직능원) : 전체학교의 13%가 실습학생 30%이상 탈락
– 10%미만(48.4%), 10~30%(38.1%), 30~50%(9%), 50%이상(4.5%)

– **(학교)** 실습 참여학생의 학습에 관심이 적고, **미참여 학생에 대한** 교과목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교육과정 부실 운영** 초래

○ **(전공과 다른 현장실습)** 명목상 전공연계는 높으나, 일부 학생은 **전공과 다른 산업체 현장실습***을 받고 **객관적인 전공적합도 판단 기준도 미비**

※ **전공적합 현장실습 운영 : 91%**(67,455건 중 57,104건)(www.hifive.go.kr '17.2.1. 기준)

* 단순 아르바이트(주유소, 편의점, 치킨, 음식 배달 등) 및 인력공급업체 실습 등

▣ 현장실습 지원체제 미흡 및 기업 인프라 부족

○ **(기업발굴 한계)** 주로 학교의 자체 노력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학습지원이 가능한 기업발굴에 한계**

– 현장실습기업 여건 및 실습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부족** 및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는 인프라 부족**

○ **(학교현장 지원 부족) 취업지원센터 기능이 단순 기업정보 제공**에 그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지원 및 연계(매칭) 부족**

–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13년)의 현장 적합성이 낮으며, 체계적 학습관리**를 위한 **시스템 미비** 및 관련 **예산지원 미흡**

▣ 현장실습 인권·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미흡

○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 미흡)** 일부 **학생 및 교원 대상**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나, **기업관계자는 미실시**

※ '17년 교원 노동인권집합연수 인원 : 600명

○ **(지도·감독 소홀)** 학교에서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주요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사용** 등 **지도·감독 소홀**

※ 직촉법 상 근로시간 초과, 표준협약서 미사용 등 위반 사례 다수 발생

○ **(학생관리 및 지도 부실)** 현장실습 추수지도 시 **직촉법, 근로기준법 위반사례에 대한 인지 미흡**, **모니터링시스템 착오 등 학생관리 소홀**

※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르게 작성 등 실습과 근로가 혼재되어 시·도교육청과 지방고용관서간의 현장실습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협력체계 미약

▣ 관련 법·제도 운영상 문제

○ **(현장실습 의무 여부)** 학교 등 현장에서는 관계규정* 상 **산업체 현장실습을 원칙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과 **교육과정 총론** 상 현장실습 **의무화 규정 개정 요구**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시 제재 수단 부재)** 동 계약서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근거가 없어 학생 안전 및 권익 보호에 한계**

○ **(표준협약서 미사용 및 과태료 부과 지연)** 현장실습표준계약서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 등 문제 발생

– 계약서 내용과 다른 계약은 **현장 혼란과 업무를 가중**시키고, 표준협약서 미사용 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Ⅳ 목표 및 과제

목 표

학생의 학습권 · 인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 촉진

핵심과제

근로(조기취업) → 학습(취업준비) 중심으로
현장실습체제 개편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체제 마련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	법 · 제도 정비
1 학교현장 지원 기반 강화	1 노동인권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1 현장실습 참여 학생 자율권 부여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2 실습 종료 후 취업지원 체계 마련	2 학생보호를 위한 현장실습 관리 강화	2 근로기준법 보호조항 반영 등 (현장실습표준협약서)
3 정부지원 현장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3 현장실습 관련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율성 제고 (교육과정 총론)
4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		

1단계 시범 · 준비기 (2017년) ▶ 2단계 단계적 확대기 (2018~2019년) ▶ 3단계 전면도입기 (2020년~)

Ⅴ 과제별 세부추진 내용

1 근로(조기취업) →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

❖ 현장실습을 근로중심→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보호 및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개념 정립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 운영

–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취업약정 및 취업연계 기업 등에서 운영)으로 보고 **학습중심**으로 실시

【근로중심(현행)과 학습중심(개선) 현장실습 비교】

구분	(현행) 근로중심 현장실습	(개선)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연계	자율(**근로중심**)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기간	**6개월 이내**	**최대 3개월(수업일수의 1/3 범위 이내)까지 가능**
운영 형태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운영 프로세스	**취업처 발굴** → 현장실습 = **조기취업**(계약직) → **졸업** 후 정식 취업	실습업체 발굴 등 **사전준비** → 현장실습 = **취업 준비** → **동계방학 시작 후 취업**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권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수당 등	근로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보장**	기업(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신분	학생 및 **근로자** 혼용	**학생**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산재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및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④ 제2조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 조항 적용하여 지속 보호 가능

○ **참여 학생**의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 **수당**(독일: 해당 산업 분야 정규인력 임금의 약 1/3 수준)을 지급

* 기존에는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학습이 아닌 **근로만 시키는 현상 발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프로세스(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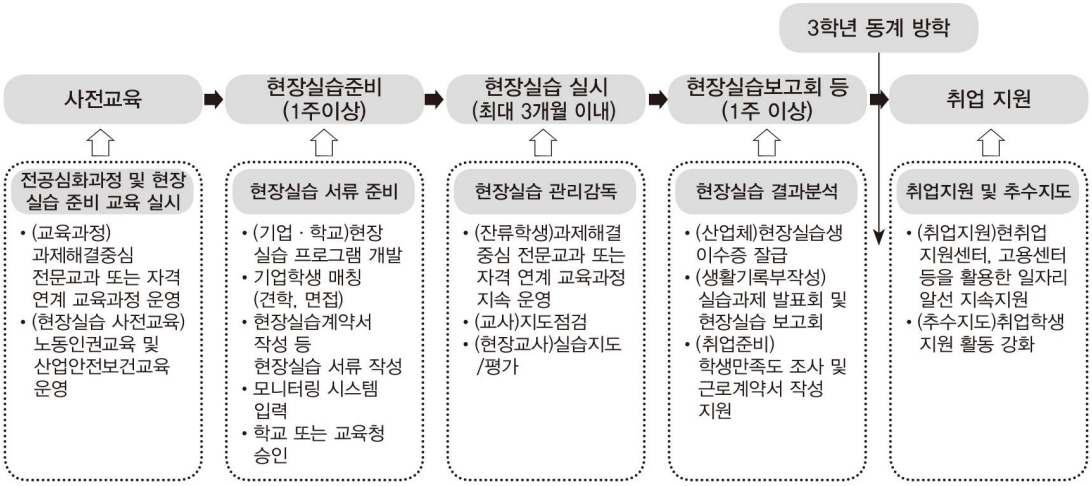

▣ 현장실습 사전준비 강화

○ **(전공 적합도 제고)** 원칙적으로 **전공에 맞는 직무 관련분야**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유도('17)

– 17개 **교과군 실무과목**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시 **제한기업* 원칙적 금지**

* **산재다발기업 및 임금체불기업**과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주유소, 편의점, 음식 배달 등) 및 **인력파견업체 현장실습 엄격히 제한**

– 다만, 학생 진로변경으로 전공과 관련 없는 **현장실습은 학생 및 학부모 동의**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 **교육청 승인** 등 절차 **강화**

① 기업 정보제공 및 확인→②실습 수행계획서 및 학부모 동의서 작성→③학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심의→④교육청 승인 →⑤학부모동반 추수지도 등

– 전공과 관계없는 산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현장실습** 실시 여부 등에 대해 향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확인**

○ **(현장실습 기업발굴)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하고 **취업약정 또는 취업이 연계된** 현장실습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학생 **매칭 지원**

* 기업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참여 의사** 응답 비율('17.7월 직능원): 50.6%

–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견학, 면접, 체험** 등 지원

○ (취업 및 진로지도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 실시**

– 현장실습 **미참여 학생과 중도 포기학생**은 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도록 하고, **진로활동**(견학, 체험, 외부강사 특강 등) 중심의 지원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 **(프로그램 개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학교와 기업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학습이 포함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 직무소개 및 사내규정, 실무과목과 연계한 **NCS능력단위(OJT*),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업기초능력** 및 **관계성 함양** 등으로 구성

*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한정

<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주요 요소(예시) >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r>
<tr><td>실습기간 및 시간</td><td colspan="3">2017.11.6.~2017.12.01. (총 000시간)</td></tr>
<tr><td>NCS 직무분야</td><td colspan="3">무선통신망구축(03)</td></tr>
<tr><td>실습과제</td><td colspan="3">• 무선통신망구축 운용지원 • 무선통신망구축 유지보수</td></tr>
<tr><td>실습 목표</td><td colspan="3">• 회사의 문화 및 주요업무, 시설현황 등에 대한 이해
• 무선통신망 유지보수 및 장비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현장 기초 업무 프로세스 이해</td></tr>
<tr><td rowspan="3">교육 시간 편성</td><td colspan="2">기초교육</td><td>실무교육</td></tr>
<tr><td>회사현황, 직무소개, 사내규정 및 업무처리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 직무배치, 업무매뉴얼 숙지 등</td><td>NCS</td><td>기업특화</td></tr>
<tr><td>00 시간</td><td>00 시간</td><td>00 시간</td></tr>
</table>

○ **(현장실습 운영)** 학교-기업 등이 **상호 협조**하여 **현장실습 운영**

– **(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전담지도자*를 지정**하여 **실습지도 및 출결관리** 등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 실습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시범과 업무지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와 일의 노하우 전수 / 학생무단 결석 시 학교와 연락체계 구축 등

– **(학교)** 현장실습 기간에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순회지도(지도·점검)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탑재**

※ 유해위험 업무지시, 수당 미지급 등 권익침해 사례 적발 시, 학생 복교 등 보호조치 후 사실상 근로 의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심사례 적발 시 협업시스템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 **(현장실습 기간 제한) 학습중심 운영 기간**은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한정**

※ 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선호기간('17.7월 직능원) : **1개월 이하(46.8%)**, 1개월~2개월(14.9%), 2개월 이상(38.3%)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자격증 취득요건**** 고려 분야는 예외인정

* 기업현장교육을 위한 예산 투입, 전담지도자 배치, 전공과 일치하는 기업 선정,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ex: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 해기사 및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취득의 기본요건이 되는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장실습 점검 및 취업지원

○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확인(학생 만족도, 권익침해 등)하고 **차년도 환류**(기업관리, 프로그램 수정 등) 등을 위해 **3학년 동계방학 전**에는 반드시 학생을 학교로 복귀시켜 **현장실습 보고회** 등을 실시 ('17)

< 현장실습 종료후 프로그램(예시) >

현장실습 점검	취업지원
– 보고회, 실습과제 발표회 등을 통한 **느낀점 공유 및 평가** –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전공과 관계**여부, **강제**적인 현장실습 실시 여부 등) – 학생 **상담 및 생활기록부 입력**	– **현장실습 기업으로 희망 시** 해당기업에 취업 지원 – 취업희망 학생 대상 **지속적인 구직활동지원** (취업지원센터, 지방고용센터 등) – 취업한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 실시

○ 3학년 **동계방학부터 취업으로 인정하되**, 고졸취업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3학년 수업일수 2/3*이상 이수 시 조기취업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수업일수 2/3이수시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 전문대학 및 대학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취업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을 위한 특례 규정을 '학칙'에 반영

▣ 학습중심 현장실습 단계적 적용 방안

1단계 시범·준비기 (2017년) ▶ **2단계 단계적 확대기 (2018~2019년)** ▶ **3단계 전면도입기 (2020년~)**

○ 1단계('17) 시범·준비기

– 현 제도 하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모델 시범운영**

※ 단, 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 복귀**는 '17년부터 모든 학교 실시 권장

– 현장실습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개선방안 안내· 홍보

○ 2단계('18~'19년) 단계적 확대기

– 개선 의지가 높은 시·도 및 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 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3단계('20년~) 전면 도입기

– 모든 고교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전면 시행**

– 이상적 운영 모델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실습 운영

2 현장실습 지원체제 강화

❖ **현장실습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우수기업 확보, 예산지원, 신규채용시기 조정 및 취업 지원 강화 등 학교현장 지원 기반 강화**

❖ **대국민·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해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개선**

1 학교현장 지원 기반 강화

○ **(우수기업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제공**('17~)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 지원 담당자와 기업 구인정보를 **실시간 연계**하고, **협회·단체**를 통한 정기적인 **구인조사**

○ **(매뉴얼 보급)** 현장실습 운영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매뉴얼 제작·보급**('18~)

– 현장실습 관련서류, 실태점검 서류, 학습관리 일지, 프로그램 개발 양식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제작

○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실습의 체계적인 학습관리 및 이수 관리 등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18~)

※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 : 학습관리시스템 /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탈(www.hifive.go.kr)에 LMS를 구축하여 도제교육, 현장실습 등 기업현장교육 학습관리에 활용

○ **(현장실습 예산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17)

– 양질의 실습기업 발굴, 현장 추수지도 강화 등을 위해 현장실습 관련 **운영비 예산(학생** 중식비 및 교통비,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확대**

– 취업선도학교 지정 시 현장실습 관리가 우수한 학교 우선 선정 추진('18~)

2 실습 종료 후 취업지원 체계 마련

○ **(신규채용 시기 조정)** 현장실습제도 정착을 위해 졸업예정자 신규사원 채용 시기를 **동계방학 이후로 적극 유도**('18~)

– **(공공부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의 협의회**(기재부 협조)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시기**를 **3학년 2학기말**(12월 이후)로 조정

– **(민간기업)** 직업계고 학생을 **교육과정 이수 이후에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

* (기재부) 경영자총연합회, 공공기관, 금융권 등 / (산자부) 산업별 협의체 /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등 민간기업 등/ (국방부) 부사관

○ **(취업박람회 시기 조정)** 고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 **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 연계** 강화('17~)

*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 콘서트,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등

– 정부(노동부, 국토부 등) 및 시도 주도의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를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취업과 연계한 기간**(10~2월)에 **집중 개최**

○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동계방학 이후** 집중적으로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구직신청, 상담 및 취업지원('17~)

– **(워크넷)** 무료 직업심리검사(11종) 및 **구인정보 제공·알선***을 통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의 **취업 희망자 정보**를 **워크넷과 연계**

– **(고용센터)** 집단상담·단기특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구직스킬 향상 등 지원

* 해당지역 특성화고 학생의 구직수요 연계 등 협업체계 구축(필요시 MOU 체결)

○ **(취업지원센터 역할 강화)** 실습기관 선정 및 **취업처 발굴**, 학교 매칭, 교육프로그램 관리 등 취업지원센터 역할 강화('17~)

– 실습기업 모니터링·상담·순회지도 및 CEO 연수 담당 등 **취업지원센터에 역할을 부여**하고,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 학생 취업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 인력**(교원, 취업지원관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원 확보 및 예산 지원**(시·도교육청)

○ **(고용 안정 지원)**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기재부)

–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0%에서 30%로 확대**(조특법 §29의2)

※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추가, (공제) : 10%→30%(중견기업 15%), (적용기한) '20.12.31

3 정부 지원 현장교육훈련 프로그램 개편 및 확대

○ **(정부 지원 강화) 주관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중앙부처 등)

– **(취업맞춤반* 개편)** 운영기준 재설계를 통해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 후 **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지원**(중기부, '18)

* '16년도 운영 현황(793개 과정, 참여학생 8,659명, 참여(약정) 기업수 3,033개)

– **(S-OJT 지원사업 신설)** 기업에서 근로계약체결 후 NCS에 기반 한 **체계적인 현장훈련**(3개월) 실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컨설팅 지원*(노동부, '18)

* 표준훈련모델 개발·보급, 훈련계획·교수법 지도 등 컨설팅, 전담자 수당 등 지원 ('18년 3,000개 기업, 39억원)

○ **(시·도교육청 운영 모형 확대)** 시·도교육청 등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자체모형 확대 유도**('18)

❖ 시·도교육청 운영 모형 사례

① 경남교육청 경남하이(Hi)트랙 : 맞춤형 교육 및 채용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② 광주 교육청 시지원 취업맞춤반 :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장려금지원

③ 전남교육청 MC+교육(Mutual Creative Plus) : 기업, 학교, 교육청 3자간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4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

○ **(대국민·기업 홍보 강화) 현장실습에 대한 우수 사례를 학부모, 기업** 등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여 **긍정적 인식 확산**('17~)

– **학부모**가 현장을 직접 방문, **산업체 실습을 참관**하는 프로그램 도입('17)

– **기업 설명회, 기업 CEO 및 담당자 연수*** 등 개최시 **교육청**에서 현장실습 개편내용, 우수사례, 운영 모델, 노동인권교육 등을 적극 **설명·홍보**(노동부, 중기부)

* 현장실습 협약(계약), 근로보호, 산업안전보건 준수, 현장실습 지원 인센티브 정책 소개, 학생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수

○ **(교원연수 강화)** 현장실습 주요 안내 사항 및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운영에 대한 연수를 **'전체 교원으로 대상 확대' 추진**('17~)

– **특성화고·마이스터** 전체 교원이 집합 **직무연수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확대 추진**

3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

❖ **학생, 교원, 기업 담당자 등 대상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콘텐츠 제공**
❖ **학생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실태 지도·점검 강화, 관계부처 협업시스템 구축 추진**

1 노동인권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노동인권교육 강화)** 전체 직업계고 **학생,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CEO·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실시('17)

– (**학생**) **모든 학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사이버 강좌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특강** 등 추가 실시

*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업일반, 진로와 직업, 실무과목 등

– (**교원**) **노동인권교육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집합* 및 원격연수** 개설, 직업계고 교원 **직무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운영**

* 교원 노동인권 집합연수 계획 : ('17) 3,100명 → ('18) 9,000명 → ('19) 15,000명
** 교원 원격연수 개설방안을 관계기관(중앙교육연수원 등)과 협의 중('17)

– **(기업)**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 기업에 노동인권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CEO 및 담당자 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실시**(노동부, 중기부)

○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실습교과와 연계하여 실습 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사이버(이러닝)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 제공('17)

– 시도교육청 및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사)과 MOU 체결을 통해 다양한 안전보건활동 지원(직업계고 안전담당 교직원 대상 집합연수 실시 등)

○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과정과 연계 한 **노동인권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18)

– 전문기관(고용노동연수원, 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해당기관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례중심의 교수·학습자료 개발

2 학생보호를 위한 현장실습 관리 강화

○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교육청이 **사전에 관련서류* 확인** 후 단위학교에 **환류(feedback)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등 **상시 관리 기능 강화**('17)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사업자등록증(인력파견기업 확인), 현장실습계획서(학습중심현장실습),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만족도 확인) 등

– **임금체불사업주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노동부)을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에 탑재**하여 현장실습 **실시 전 확인**('17)

○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 교육부·지방노동관서·중기부·전문가 합동으로 **중앙단위 실태점검 확대·강화**

– **(실태점검 연중실시) 중앙단위 실태점검** 확대* 및 **전문가** 합동 점검 체제 **시범 도입**('17)

* 기존 연간 4개 교육청 지정 **정기 점검** → 전체교육청 대상 정기점검 및 **상시 점검**

– **(기업 및 학교 책무성 강화) 직촉법 위반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현장실습 관리가 **부적절*한 학교**는 지도、감독 강화('17)

* 현장실습 주요 안내사항(규정) 미준수,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부실, 권익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축소 등 규정 미준수, 관련 서류 미비 등

○ **(협업시스템 구축)** 현장실습 **참여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청–지방노동관서**의 **직접적 협업 시스템 구축**('17)

기존	개선
(학교) 현황탑재 → **(시·도교육청)** 결과 취합, 위반사항 **교육부 보고** →	**(학교)** 현황탑재 → **(시·도교육청)** 결과 취합, 위반사항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요구** →
(교육부) 조치요청 → **(노동부)** 명단 통보 →	(교육부) – **(노동부)** : 현황 모니터링
(지방노동관서) 의심 사업장 조치	**(지방노동관서) 의심 사업장**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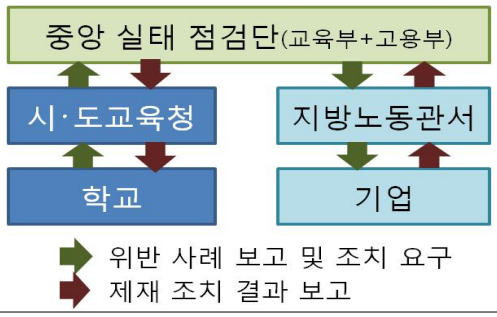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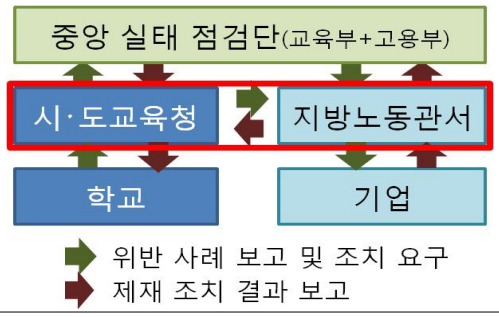

4 법·제도 정비

❖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자율성 부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협약 내용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 **근로기준법 보호조항을 반영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여부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확히 안내**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17~)

○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자율성 부여)**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 실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자율 의사**에 따라 실시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주체 변경)**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협약서 고시 주체**(고용노동부장관→교육부장관) **변경**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거나, 해당 ~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 다만, ~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 다만, ~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17~)

○ **(학생보호 강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직촉법 제9조)를 근로기준법 보호조항을 참고하여 직무체험 취지에 맞게 개정

– 표준협약서 필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학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실습수당, 소정실습시간, 실습 장소, 실습내용 등

○ **(기업의 의무사항 명시)** 현장실습 기업에 필요한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직무체험 취지에 맞게 운영

* 실습시간 제한, 휴식시간 부여, 야간·휴일실습 금지 등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해석하여 안내

○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 검토)** 현장실습을 독립교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실습(가칭) **단일교과(최대 34단위)** 도입 검토**('18, 교육과정 개정)**

–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예절교육, 과제해결중심 전공교과, 견학, 체험 등 **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

※ 현재 현장실습의 교육과정 편성 유형은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VI 향후 추진일정

○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사회관계장관회의** : 8. 25.(예정)

※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및 정부합동 보도자료 배포 검토

○ **예산 지원방안 마련**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범 적용** : '17. 9~

Ⅶ 관계부처 협조사항

▣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체제 관련

○ **(우수기업 발굴 등)** 현장실습 우수 **기업후보군 제공**, **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중기부, 노동부, 산자부 등)**

– **워크넷과 하이파이브시스템**(hifive) 취**업 희망자 정보연계 (노동부)**

○ **(신규채용 시기 조정)**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신규 채용 시기를 **동계방학 이후(1월~)**로 유도 **(기재부, 산자부, 노동부, 중기부, 국방부)**

○ **(체계적 교육훈련 지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부 지원 **현장교육훈련 프로그램** 개편 및 확대 **(중기부, 노동부)**

○ **(기업 인식개선) 설명회, 기업 CEO 및 담당자 연수 시** 현장실습 지원 관련 **홍보 강화 (노동부, 중기부)**

▣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 관련

○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 중앙단위 실태점검 참여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교육부, 노동부)**

–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체불·산재다발 등 기업 명단 관리 및 제공**

○ **(노동인권교육) 기업 CEO 및 인사 담당자 연수 시 참고자료 배포 및 노동인권 교육** 실시 **(노동부, 중기부)**

○ **(협업시스템)** 교육청–**지방고용관서**의 **협업 시스템 구축 (노동부)**

▣ 법·제도 정비 사항

○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자율성** 부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직촉법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 (교육부, 노동부, 산업부)**

Ⅷ 시·도교육청 추진 협조사항

▣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학교 관계자(교장, 교사 등) 연수 : 9월~**

○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편, 사전준비, 시범운영, 점검 및 취업지원 등

▣ **시도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범운영 방안 마련·시행 : 9월~**

○ 시·도 자체 여건을 고려, 시범운영 범위, 대상, 방법 등 확정

▣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 추진 : 9월~**

○ 사전 모니터링 강화, 전체 교육청 대상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강화, 지방고용관서와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등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역할 강화 추진 : 9월~**

○ 취업지원센터 역할 추가 부여, 인력 보강 및 예산 지원 추진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정 추진 : 10월~**

○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편 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 개정

○ 개정 후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학교에 적용 안내

▣ **직업계고 교원 및 학생 노동인권교육(산업안전보건 등) 실시 : ~12월**

○ **(교원) 직무연수**(9~12월), 인원 : 2,509여명(예정), 591명(상반기 실시)

※ 고용노동연수원 주관 권역별 시행 예정이며 교원 직무연수임(15h)

○ **(학생)** 사이버 교육(~10월), 인원 : 9만명

▣ **'17년 제5차 특별교부금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 10월~**

○ 현장실습 교육과정 프로그램개발비, 강사비, 운영비 : 1,100백만원

– 교사 프로그램개발비(10,000명, @11만원), 강사비(시도 지침 적용) 등

○ 학생 현장실습비(중식비, 교통비) : 2,000백만원

– 중식비(10,000명, @7천원), 교통비(10,000명, @3천원) <10,000명×10,000원×20일>

○ 교원 집합연수비(노동인권교육 직무연수) : 500백만원

– 직무연수비(2,500명, @20만원)

※ '17년 제5차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통보 예정('17.10~)

제2부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절차 및 서식(안)

1.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
2. 실습기업 발굴 및 사전 답사
3. 실습기업 직무분석 및 산업체별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4.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계획 설명 및 희망학생 모집
5. 실습기업-학생 매칭
6. 사전교육 실시
7. 학습 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8. 학습 중심 현장실습 실시
9. 학습 중심 현장실습 종료 및 복귀
10. 현장실습 보고회 및 평가 실시

제2부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절차 및 서식(안)

학습 중심 현장실습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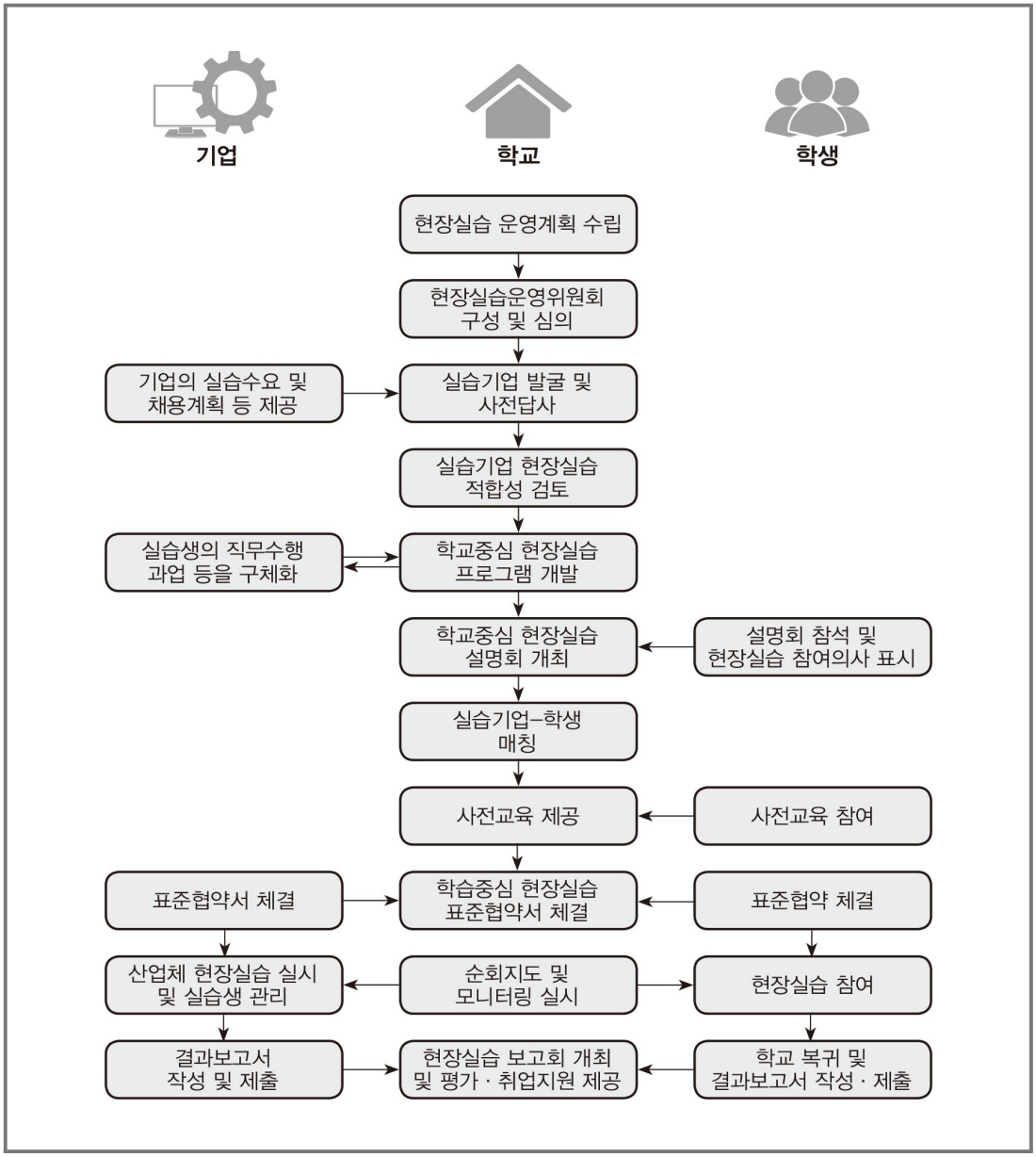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절차(안)[1)2)]

1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 (3월)

<주요활동>

- **학교내 현장실습 운영 조직 구성**
  - 학교내 현장실습 운영조직 구성 및 역할 배분 방안 검토
  - 학교밖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 체계 구축 방안 검토
  - 전담인력(취업지원관 등) 활용 방안 마련
- **학교 경영목표 분석 및 수요자(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 의견 수렴 실시**
-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내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심의·확정**

주요 운영방안

○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구성

- 개별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 수립 및 운용
-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산업체 선정 심의, 실습시기 결정, 학생지도, 산업체 감독 등 현장실습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
  - ※ 담당업무: 학교현장실습계획 심의 및 추진사항을 확인·점검 및 산업체 및 대상 학생에 대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적부를 심의
-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의 위원으로 구성(교원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개별 학교는 상기에 제시된 현장실습 운영목적 또는 기능, 구성 등을 포함하여 임기, 회의, 위원회의 책무 또는 의무사항, 관계부서 협조사항 등을 규정화하여 운용

1) 운영절차별 운영시기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학교 자체 일정이나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음
2) 본 자료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매뉴얼(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및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김기용 외, 2016)」,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등을 참고로 한 것임.

○ 학교내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 학교는 학과별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등을 강조하여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학교 구성원·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편성·운영 방안,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검토하여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현장실습 산업체 pool 관리 및 신규 기업체 발굴 계획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 필요
- 학교는 연간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제출 안내가 있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실습기업 발굴 및 사전 답사 (3~8월)

<주요활동>

-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산업체 발굴 및 사전 답사**
  - 산업체 기본 정보 확인 : 회사명, 기업형태, 업종, 주소 및 홈페이지, 주요 생산품, 종업원 현황 등
  - 실습생의 채용 여부 및 규모 확인
  - 실습생이 수행 가능한 직무 확인 및 기업 실습수요 분석

<주요 점검사항>

- 현장실습 산업체 적절성 평가 :
  - 학교내 전공(학과)와의 관련성 : 학과별 교육과정(특히 전문교과) 내용과 실습내용(실습 중 활용하는 시설·설비 포함) 사이의 적합도 평가
  - 유해사업장 여부(예: 체불사업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등)
  -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주유소, 편의점, 음식 배달 등) 및 인력파견업체 현장실습 엄격히 제한
  - 실습생에 유해환경 가능성 검토
  - 기존 실습생의 평가(또는 만족도) 결과
- 자체 신입사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현장실습 연계 가능성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개최 및 산업체 적합성 검토**

주요 운영방안

○ **개별 학교는 우수기업 및 강소기업 DB 등을 활용하여 실습업체 대상을 발굴하고 해당 산업체의 직무내용,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 실습여건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제②항에 따라 학교는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우수기업 DB 및 강소기업 DB 등을 활용하여 실습업체 대상 선정, 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DB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고를 확인 후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선정**

  ※ 우수기업 DB: sminfo.smba.go.kr 접속→[우수중소기업] DB 탭→기업 검색
  강소기업 DB: work.go.kr 접속→[구직] 탭 클릭→[강소기업] 메뉴 클릭
  체불사업주 DB: moel.go.kr 접속→[정보공개] 탭 클릭→[체불사업주명단공개] 메뉴 클릭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고: moel.go.kr 접속→[정보공개] 탭 클릭→[사전정보 공표 목록] 메뉴 클릭→[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클릭 후 '사망재해 발생 등 재해율 상위사업장 명단 발표' 정보 확인

  ※ 우수기업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제공 예정.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지원 담당자와 기업 구인정보를 실시간 연계하고, 협회·단체를 통한 정기적인 구인조사 실시 예정('17~)

- 17개 교과군 실무과목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시 제한기업* 원칙적 금지**

  ※ 산재다발기업 및 임금체불기업과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주유소, 편의점, 음식 배달 등) 및 인력파견업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업체)로의 현장실습 엄격히 제한

-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 산업재해로부터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하며, 2012년 4월 1일부터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현장실습 담당교사 또는 학과 부장교사 등은 산업체에 방문하여 해당 산업체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학교장에게 보고

- 이를 위해 산업체 선정 시 산업체 선정 기준을 우선 수립하여 체크리스트로 개발·활용 가능

[실습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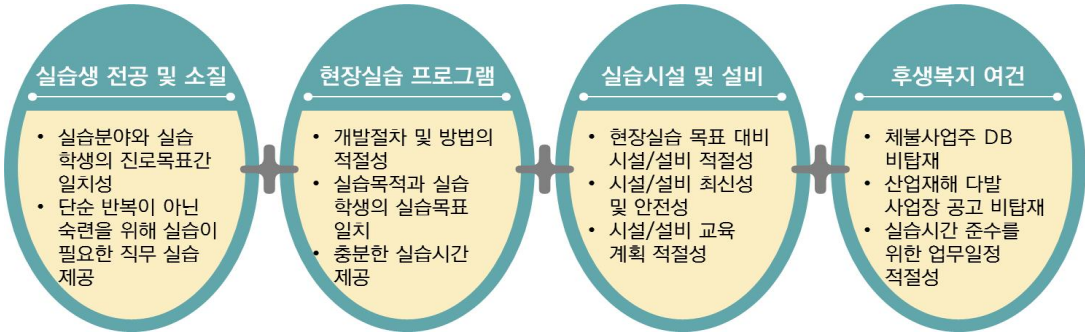

자료: 김기용 외(2016).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및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p. 142.

○ **실습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효과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습 산업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기업 DB 및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단,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DB 및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기업 명단을 통합 연동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통합 연동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탈 등에 링크 또는 배너 탑재

– 해당 산업체의 현장실습 내용,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및 학교의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해당 산업체의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 **학습 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체의 이해 도모, 우수 기업 선정 등을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기업을 대상으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취지, 기대효과, 기업체에 주는 편익 등을 설명

– 학교 단위로 유관기관의 협조 등을 토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유관 분야의 학교와 함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지역별로 시·도교육청, 고용센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

○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산업체 정보, 체불사업주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DB 대조 등을 통해 실습업체 최종 선정**

관련자료

○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 조사 양식
○ 현장실습 산업체 적절성 평가 체크리스트 양식

서식예시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기업명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FAX	
주생산품						
근로자 수						
실습 가능 직무명 및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자체 신입사원 프로그램 여부 및 주요 내용				학습 중심 현장실습 연계 가능성		
학과 전공과의 관련성						
병역특례	□ 가능 □ 불가능					
가입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상해보험 □ 고용보험 □ 직업훈련재해보험					
기숙사	□ 유 (□ 사내 □ 사외) □ 무			실습생 부담액:		
식사	1일 ( )식			실습생 부담액:		
실습 시 수당	수당 ( )원					
취업 후 급여	(월, 일, 시) ( )원, 수당 ( )원, 상여금 ( )%					
취업 후 근무형태	□ 기본근무 □ 잔업 □ 주간근무 □ 2교대 □ 3교대					
실습 후 취업	□ 취업보장 □ 선별취업 □ 기타 ( )					
실습 희망인원	00과		00과		00과	계
	남 ( )명 여 ( )명		남 ( )명 여 ( )명		남 ( )명 여 ( )명	남 ( )명 여 ( )명
구비서류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사본 □ 학교장추천서 □ 학교생활기록부사본 □ 기타 ( )					
유해사업장 여부						
기타의견						

주: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의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매뉴얼」 71쪽의 서식을 참고로 일부 수정한 것임.

서식예시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 (예시)

1. 직업교육훈련 전공 분야

	적절	부적절
1-1. 해당 업체의 실습분야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있는가? ▲ 참고자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류, 통계분류 포털(https://kssc.kostat.go.kr/) 고용직업분류	☐O	☐X
1-2. 실습 직무의 내용이 단순반복 직무가 아닌 숙련형성을 위해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인가? ▲ 참고자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류, 개별학교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업체 및 학교 간 현장실습 교과 반영 능력단위 대조)	☐O	☐X

2.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2-1. 해당 업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는가? ▲ 참고자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류	☐O	☐X
2-2. 해당 업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목적은 학교(학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가? ▲ 참고자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류	☐O	☐X
2-3. 해당 업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학생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충분한 실습 기회 및 시간을 제공하는가? ▲ 참고자료: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또는 일정	☐O	☐X

3.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적절	부적절
3-1. 해당 업체의 실습시설 및 설비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 참고자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류, 현장방문 또는 실습시설/기자재 목록	☐O	☐X
3-2. 해당 업체의 실습시설 및 설비는 산업 및 기술 동향 상 최신의 기술 교육이 가능한가?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지는 않은가?) ▲ 참고자료: 현장방문 또는 실습시설/기자재 목록	☐O	☐X
3-3. 해당 업체의 실습시설 및 설비를 통한 교육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참고자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류	☐O	☐X
3-4. 해당 업체의 실습시설 및 설비를 통한 교육에 있어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는가? ▲ 참고자료: 현장방문 또는 실습업체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계획 또는 요령 등	☐O	☐X

서식예시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 (예시)

4. 후생복지 여건

	적절	부적절
4-1. 해당 업체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은 적절한가? ▲ 참고자료: 산업재해 예방계획서	❑O	❑X
4-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체불사업주로 공개된 전력이 없는가? ▲ 참고자료: 체불사업주 DB(www.moel.go.kr)	❑O	❑X
4-3.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2에 의거하여 산재다발기업으로 공개된 전력이 없는가? ▲ 참고자료: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고(www.moel.go.kr)	❑O	❑X

주: 김기용 외(2016)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및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143~144쪽을 참고로 일부 수정한 것임.

3 실습기업 직무분석 및 산업체별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3~8월)

<주요활동>

- **실습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직무수행내용(또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진술**
  - (실습기업) 현장실습 실시 직무분야 분석 및 상세화
  - (학교) 산업체에서 수행할 직무내용을 실무과목(또는 NCS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체화
- **실습기업과 학교는 실무과목(또는 NCS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마련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상호 협의를 토대로 구성**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기업현황 : 기업명, 대표자, 업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등
- 실습기간 :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 이내)까지 가능
- 실습내용 :
  - 교육내용(직무수행내용) 및 관련 NCS 능력단위
  - 교육목표 : NCS를 활용하여 개괄적으로 진술(해당 능력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요구를 반영하여 진술)
- 현장실습 기업체별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 실습기업별 현장실습 담당자 지정 여부 확인

- **기업별 자체 고졸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활용한 현장실습 계획 수립**
  - 기업 자체 프로그램의 학교(학과) 전공적합성 등을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정

주요 운영방안

○ **학교와 실습기업은 현장실습의 운영목적 및 요구, 현장실습생의 사전경험 및 교육과정 이수 내용, 현장실습 개선요구 등을 종합하여 실습목표 기술**

- 현장실습 목적은 실습을 이수하는 학생이 희망하거나 학생에게 필요한 실습영역 및 내용 즉, 실습요구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함. 현장실습 개선 요구 반영을 위해 이전 현장실습 이수학생들을 통한 조사·분석 자료, 산업체 및 학교 관계자 협의가 요구될 수 있음
- 학교는 현장실습의 운영 목적이나 요구, 학생의 사전경험과 같은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실습기업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제공 가능한 실습의 범위나 내용에 대한 개관을 수립
- 상기 활동의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와 실습기업은 실습목표를 수립하며 명확히 기술함. 실습목표는 실습 후 학생의 역량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기술

○ **실습기업은 산업체의 여건 및 특성, 인력활용 계획, 현장실습 자원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활용할 부서를 선정하고 현장실습생이 수행할 직무를 직무기술서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 직무기술서는 조직 내의 특정한 직무에 대해 수행업무와 범위, 책임과 권한, 자질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한 것으로, 현장실습생과 학교 모두를 위해 현장실습생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 현장실습생은 업무에 생소한 만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시와 범위를 지정하여 주지 않으면 현장실습 기관의 업무 향상이나 실습생 개인의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실습생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고, 정해진 범위의 일을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절

○ **학교와 실습기업은 실습목표 및 실습생의 직무기술서 등을 토대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구조화**

- 실무과목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구조화

- **NCS 직무분야** : 직무기술서상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와 가장 유사한 NCS 세분류를 선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포털 http://www.ncs.go.kr/ 활용

- **실습기간** :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 이내)까지 가능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자격증 취득요건(해기사, 간호조무사 등) 고려 분야는 예외인정

  ※ 실습시기는 3학년 시기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산업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실습목표** : 선정한 NCS 직무분야(세분류)의 개요를 활용하여 실습목표를 진술하거나 또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습목표 진술

- **실습내용** : 직무기술서의 수행업무를 토대로 실습내용을 구체화한 뒤, 실습내용과 유사한 NCS 능력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 특화 실습내용으로 구조화

- **실습유형** : 실습생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교육은 크게 ① 오리엔테이션, ② 집합교육, ③ 실무교육 또는 OJT(직무현장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오리엔테이션, 집합교육, 실무교육 또는 OJT(직무현장교육) 등 실습과정에서 실습학생에게 전달 가능한 교육방법을 설정하고 각 교육내용별로 적절한 교육방법과 시간을 설정함.

  ※ 오리엔테이션은 실습업체 및 업무 소개, 노동인권 교육,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고려하여 반드시 포함하고 실무교육 또는 OJT(직무현장교육)의 교육시간이 집합교육에 비해 크게 상회할 수 있도록 구성

<table>
<tr><th>유형</th><th>교육 내용</th></tr>
<tr><td>오리엔테이션</td><td>○ 기초적인 조직이해 및 업무이해에 대한 내용, 조직의 문화 및 조직적응에 대한 내용 등
○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은 주로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③ 사람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테마를 기본으로 구성 가능
<table>
<tr><th colspan="3">① 조직에 대한 이해</th><th colspan="2">② 일에 대한 이해</th><th colspan="2">③ 사람에 대한 이해</th></tr>
<tr><th>회사개관</th><th>경영환경</th><th>관련제도</th><th>업무이해</th><th>업무기본</th><th>회사문화 및 조직구성원과의 관계</th><th>자긍심 부여</th></tr>
<tr><td>- 비전
- 중심가치
- 연혁
- 조직도</td><td>- 매출
- 업계이해
- 업계위치
- 전망</td><td>- 인사제도
- 복리후생
- 교육체계 시스템
- 각종규정</td><td>- 부서별 업무투어
- 사업장 이해
- 직무이해</td><td>- 보안 등 규정
- 기안 등 문서작성</td><td>- 회사문화 및 직장예절에 대한 이해</td><td>-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 자긍심 형성 등</td></tr>
</table></td></tr>
<tr><td>집합교육
(기초교육)</td><td>○ 지식 위주의 내용으로 직무 및 조직적응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화된 내용
<table>
<tr><td>기본교육
(실습생 권리·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td><td>- 실습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 숙지
- 신입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 실습생이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함</td></tr>
<tr><td>조직적응력 교육</td><td>-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 향상시켜줌
- 주요 사업분야별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td></tr>
<tr><td>직무기본역량 교육</td><td>-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직무기본역량 배양
- 문서작성 등 직무공통역량도 함께 배양하는 것이 필요</td></tr>
</table></td></tr>
<tr><td>실무교육 또는 OJT(직무현장교육)</td><td>○ 직무와 관련된 전문 내용(기술 습득) 등
○ OJT(직무현장교육)는 일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임. 전담지도자들의 시범과 업무지시 과정을 관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실습생들이 실질적인 업무와 일의 노하우를 배우도록 함.
○ 조직적응과 관련된 내용 또는 기본적인 업무태도 및 업무매너에 대한 내용을 위해 멘토링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기업용. 63~74쪽.

관련자료

○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서식예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예시, 1주용)

(주)OO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주소	부산시 강서구 신호공단 1234			
담당자(직위)	홍 길 동(인사팀장)			
현장실습기간 및 시간	2017.11.6.~2017.11.10. (35시간)			
NCS 직무분야	무선통신망구축(03)			
실습과제	• 무선통신망구축 유지보수			
평가횟수	1회	평가항목	과제수행	
교육 시간 편성	총 교육시간	입문교육 (안전, 보건, 직업기초능력교육)	실무교육	
			NCS	기업특화
	35	7	28	0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자 구성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개발책임자	OO공업고등학교	010-000-0000	김 ㅇ ㅇ
기업체현장전문가	OO기업	010-000-0000	우 ㅇ ㅇ

□ 요구분석 및 실습 목표

구분	내용
실습생 특성	▹ 학교는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3가지 코스를 운영 중이며 실습생은 이 중 무선통신 코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들로 학습동기가 높은 편임 ▹ 무선통신 뿐 아니라 유선통신, 위성통신 관련된 기초 교과목을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일부는 전자업체에서 단기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음
주요 실습요구	▹ 단순 통신망구축 보조 업무 뿐 아니라 망 설치, 유지보수, 장애방지 대책과 관련된 기초 업무에 대한 실습을 희망함 ▹ 최근 각광받고 있는 휴대폰 기지국 관리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실습교육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
현장실습 목표	▹ 무선통신망이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장애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및 장비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서식예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예시, 1주용)

□ 관련 NCS 능력단위 선정 결과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무선통신망구축	무선통신망구축 유지보수 (2002020310_14v2)	▷ 유지보수계획 수립하기 ▷ 장애방지대책 수립하기 ▷ 유지보수인력 교육하기

□ 실습내용 구조화

1. 입문교육	2. 실무교육: NCS	3. 실무교육: 기업특화
• **오리엔테이션** 1) 업체 및 업무 개요 2) 실습일정 3) 보건/안전관리 실무 4) 성희롱 예방교육	• **무선통신망 유지보수 실습** 1) 유지보수계획 수립 2) 장애방지대책 수립 3) 유지보수인력 교육	

□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일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역				비고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강사 (직위)	장소	
1일	7	입문교육	회사소개 및 업무 개요 현장실습 안내,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견학/ 강의	홍길동	회의실	
2일	21	실무교육 (NCS)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2002020310_14v2)	실습	김철수	생산라인	
3일							
4일							
5일	5	실무교육 (NCS)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2002020310_14v2)	실습	김철수	생산라인	
	2	실무교육	과제수행 평가	서술	김철수	회의실	

서식예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예시, 1개월용)

(주)OO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주소	부산시 강서구 신호공단 1234			
담당자(직위)	홍 길 동(인사팀장)			
현장실습기간 및 시간	2017.11.6.~2017.12.01. (140시간)			
NCS 직무분야	무선통신망구축(03)			
실습과제	• 무선통신망구축 운용지원 • 무선통신망구축 유지보수			
평가횟수	중간 및 최종평가 2회	평가항목	과제수행	
교육 시간 편성	총 교육시간	입문교육 (안전, 보건, 직업기초능력교육)	실무교육	
			NCS	기업특화
	140	35	70	35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자 구성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개발책임자	OO공업고등학교	010-000-0000	김 ㅇ ㅇ
기업체현장전문가	OO기업	010-000-0000	우 ㅇ ㅇ

□ 요구분석 및 실습 목표

구분	내용
실습생 특성	▹ 학교는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3가지 코스를 운영 중이며 실습생은 이 중 무선통신 코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들로 학습동기가 높은 편임 ▹ 무선통신 뿐 아니라 유선통신, 위성통신 관련된 기초 교과목을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일부는 전자업체에서 단기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음
주요 실습요구	▹ 단순 통신망구축 보조 업무 뿐 아니라 망 설치, 유지보수, 장애방지 대책과 관련된 기초 업무에 대한 실습을 희망함 ▹ 최근 각광받고 있는 휴대폰 기지국 관리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실습교육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
현장실습 목표	▹ 무선통신망이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장애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및 장비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서식예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예시, 1개월용)

□ 관련 NCS 능력단위 선정 결과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무선통신망구축	통신망구축 운용지원 (2002020309_14v2)	▹ 망운용계획 수립하기 ▹ 망품질계획 수립하기 ▹ 망운용인력 교육하기
	무선통신망구축 유지보수 (2002020310_14v2)	▹ 유지보수계획 수립하기 ▹ 장애방지대책 수립하기 ▹ 유지보수인력 교육하기

□ 실습내용 구조화

1. 입문교육	2. 실무교육: NCS	3. 실무교육: 기업특화
• **오리엔테이션** 1) 업체 및 업무 개요 2) 실습일정 3) 보건/안전관리 실무 4) 성희롱 예방교육	• **무선통신망 운용·구축 실습** 1) 유지보수계획 수립 2) 장애방지대책 수립 3) 유지보수인력 교육	• **무선통신망장비조립 실습** 1) 장비 회로 조립 2) 장비 케이스 조립 3) 장비 점검

□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일	시간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역				비고
			내용영역(능력단위)	방법	강사 (직위)	장소	
1주	14	입문교육	회사소개 및 업무 개요 현장실습 안내,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견학/ 강의	홍길동	회의실	
	21	입문교육	부서별 소개 및 현장견학, 제품생산과정, 성희롱예방교육 등	견학/ 강의	홍길동	회의실	
2주	35	실무교육 (NCS)	무선통신망 운용 지원 (2002020309_14v2)	실습	김철수	생산 라인	
3주	35	실무교육 (NCS)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2002020310_14v2)	실습	김철수	생산 라인	
4주	21	실무교육 (기업특화)	무선통신망 장비 조립 (기업특화교육)	실습	이영희	생산 라인	
	14	실무교육	과제수행 평가	체크 리스트	김철수	회의실	

서식예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간략형 예시, 1주용)

(주)OO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예시)

회사명	○○○엔지니어링	부서명	생산부	주소	광주 북구 ○○○
담당자 (전담지도자)	홍길동	직위	과장	연락처	전화: 062-000-0000 E-mail: 000@000.000
실습기간	2017. 11. 6. ~ 2017. 11. 10.				
실습목표	- 실습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업의 조직원으로써 업무처리를 위한 기초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 용접원 직무를 이해하고 산업설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도면에 따라 가공 및 용접하는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관련 NCS	(중분류)금속재료 - (소분류)용접 - (세분류)CO_2용접				
전공관련성	** 실무과목 또는 학과 인력양성 유형과의 관련성 기술* ** 학과 교육과정의 현장 실무에의 활용 가능성 기술*				
관련 교과목	** 실무교육과 관련한 기초과목, 실무과목 제시*				
기타 필요사항					

현장실습 프로그램(안)

구분	일/시간	실습내용	실습방법	담당자	관련 NCS 능력단위
오리엔테이션	1일/2	- 회사 및 조직현황 안내 - 부서 및 조직생활(복리후생 등 포함) 안내 - 부서 배치 및 직무 소개	강의/견학	홍길동	
기초교육	1일/5	- CO_2 용접 재료 준비 - CO_2 용접 장비 준비 - CO_2 용접 작업 안전관리	강의/실습	홍길동	1601050203_16v2 1601050204_16v2 1601050201_16v2
실무교육	2-5일/126	- CO_2 용접 도면 해독 - CO_2 용접 가용접 작업 - CO_2 용접 용접부 검사 - CO_2 용접 작업 후 정리정돈	실습(OJT)	홍길동	1601050202_16v2 1601050205_16v2 1601050208_16v2 1601050210_16v2
평가	5일/2	- 과제수행 평가	-	홍길동	

서식예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간략형 예시, 1주용)

(주)OO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예시)

회사명	○○랜드	부서명		주소	
담당자 (전담지도자)	김영희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실습기간	2017. 11. 6. ~ 2017. 11. 10.				
실습목표	- 실습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업의 조직원으로써 업무처리를 위한 기초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 호텔·레저분야 직무를 이해하고 객실관리, 접객 서비스 등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관련 NCS	(중분류)관광레저 - (소분류)숙박서비스 - (세분류)객실관리, 접객서비스 (중분류)관광레저 - (소분류)관광레저서비스 - (세분류)유원시설운영관리				
전공관련성	** 실무과목 또는 학과 인력양성 유형과의 관련성 기술* ** 학과 교육과정의 현장 실무에의 활용 가능성 기술*				
관련 교과목	** 실무교육과 관련한 기초과목, 실무과목 제시*				
기타 필요사항					

현장실습 프로그램(안)

구분	일/시간	실습내용	실습방법	담당자	관련 NCS 능력단위
오리엔테이션	1일/2	- 회사 및 조직현황 안내 - 부서 및 조직생활 (복리후생 등 포함) 안내 - 부서 배치 및 직무 소개	강의/견학	김영희	
기초교육	1일/5	- 객실관리 - 접객서비스 - 유원시설 주요정보	강의/실습	김영희	1203020201_13v1 1203020502_13v1 1203040411_16v2
실무교육	2-5일/26	- 객실관리 실무 (객실예약접수, 체크인, 객실 수납 등) - 유원시설 운영관리 실무	실습 (OJT)	김영희	
평가	5일/2	- 과제수행 평가	-	김영희	

서식예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간략형 예시, 2주용)

(주)OO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예시)

회사명	○○○기계	부서명		주소	
담당자 (전담지도자)	홍길동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실습기간	2017. 10. 30. ~ 2017. 11. 10.				
실습목표	- 실습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업의 조직원으로써 업무처리를 위한 기초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 프레스금형 부품가공은 소재·부품을 기계가공하기 위해 가공용 부품 가공 준비·부품 셋팅하고 부품 가공 및 가공부품 측정하여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관련 NCS	(중분류)금형 - (소분류)프레스금형 - (세분류)프레스금형제작				
전공관련성	** 실무과목 또는 학과 인력양성 유형과의 관련성 기술* ** 학과 교육과정의 현장 실무에의 활용 가능성 기술*				
관련 교과목	** 실무교육과 관련한 기초과목, 실무과목 제시*				
기타 필요사항					

현장실습 프로그램(안)

구분	주차	실습내용	실습방법	담당자	관련 NCS 능력단위
오리엔테이션		- 회사 및 조직현황 안내 - 부서 및 조직생활 (복리후생 등 포함) 안내 - 부서 배치 및 직무 소개	강의/견학		
기초교육		- 프레스 금형제작 안전관리 - 프레스 제작 장비유지관리	강의		1510020201_14v2 1510020202_14v2
		- 프레스 금형제작 일정관리 - 프레스 금형제작 도면해독	강의/실습		1510020203_14v2 1510020204_14v2
실무교육		- 프레스 금형 가공 : 부품가공 준비하기	실습 (OJT)		1510020211_16v1.1
		- 프레스 금형 가공 : 부품셋팅하기, 가공하기			1510020211_16v1.2 1510020211_16v1.3
		- 프레스 금형 가공 : 부품가공하기, 측정하기			1510020211_16v1.3 1510020211_16v1.4
평가		- 과제수행 평가	-		

서식예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간략형 예시, 1개월용)

(주)OO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예시)

회사명	○○○시스템	부서명		주소	
담당자 (전담지도자)	홍길동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실습기간	2017. 10. 30. ~ 2017. 11. 24.				
실습목표	- 실습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업의 조직원으로써 업무처리를 위한 기초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 응용SW엔지니어링 직무를 이해하고 기초 기술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 응용SW엔지니어링에 필요한 기초 태도를 함양한다.				
관련 NCS	(중분류)정보기술 - (소분류)정보기술개발 - (세분류)응용SW엔지니어링				
전공관련성	** 실무과목 또는 학과 인력양성 유형과의 관련성 기술* ** 학과 교육과정의 현장 실무에의 활용 가능성 기술*				
관련 교과목	** 실무교육과 관련한 기초과목, 실무과목 제시*				
기타 필요사항					

현장실습 프로그램(안)

구분	주차	실습내용	실습방법	담당자	관련 NCS 능력단위
오리엔테이션	1	- 회사 및 조직현황 안내 - 부서 및 조직생활 (복리후생 등 포함) 안내 - 부서 배치 및 직무 소개	강의/견학	○○○	
기초교육		- 기초 비즈니스교육(직장예절, 사내규정, 기안 등 업무처리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의	홍길동	
		- 네트워크 기초교육 - SW 프로그램 기초 교육 - SW 제작 및 운영 매뉴얼 교육	강의/실습	홍길동	
실무교육	2-4	- 화면설계 : ○○○프로그램의 화면 및 구조 설계	실습(OJT)	홍길동	2001020224_16v4
		- 로직설계 : ○○○ 알고리즘 및 예외처리 로직 설계, 순서도 작성			2001020216_15v3
		- 프로토타입 개발 : 해당 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용 프로그램 개발			2001020221_16v4
평가		- 과제수행 평가	-	홍길동	

4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계획 설명 및 희망학생 모집

<주요활동>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현장실습 설명회 개최**
  -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방식(실습내용, 실습기업 정보제공 방법, 평가 등) 안내
  - 전년도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경험 및 당해 연도 계획 소개
- **학습 중심 현장실습 희망학생 수요조사 실시(취업희망자 조사)**
  - 희망학생은 담임교사나 취업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준비(실습기업과의 정보 공유)

    ※ 현장실습 비희망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이수함을 안내

5 실습기업-학생 매칭

<주요활동>

- **실습기업에서 수행할 직무내용과 학생 수요를 비교하여 기업-학생 매칭**
  - 필요시 산업체 현장실습 설명회 추가 운영
  - 필요시 학생들이 해당 기업을 탐색할 수 있는 체험 기회 제공(가능하면 3학년 1학기에 실시)
- **고려사항 및 참고사항**
  - 실제 선발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학생-실습기업 사이의 투명성 제고할 수 있음

    ※ (실습기업) 직무배치 등의 채용정보를 구체화

    ※ (학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 현장실습 내용과 방법을 학생-기업-학교가 공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실습기업에 관한 상세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채널(예: 학교내 취업 관련 홈페이지 등) 확보·운영

6 사전교육 실시

<주요활동>

- **노동관계법(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 등 사전교육 실시**
  - 기업에서의 사례를 활용한 실질적인 교육 운영
  - 필요시 외부 강사 활용
- **고려사항 및 참고사항**
  - 모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등을 추가 실시하도록 강화
  - 사전교육에서는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함께 현장실습 내용, 현장실습 방법 및 기간, 실습결과의 평가 등도 함께 안내

주요 운영방안

< 노동관계법(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

○ 개별 학교는 자체적인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에 대비하여 노동관계법(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기와 방법 설정

- 노동관계법(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실습생 노동인권 등 실습생의 권리에 대한 사항,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활용방법 등이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관련 사항,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임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실습 과정에서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였을 시 학생이 교사와 학교에 즉시 공유하여 즉각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유선(1644-3119)·온라인(http://www.youthlabor.co.kr/)·모바일(근로권익 앱, 카카오톡) 상담 및 권역별 거점센터의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청소년 보호위원의 무료권리구제 지원

- 노동관계법(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현장실습 실시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모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등을 추가 실시하도록 강화('17~)

- 교육 시간은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편성할 수 있으며, 가능한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업일반, 진로와 직업 또는 전공교과 등 정규 교육과정을 활용한 사전교육을 권장

※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기초, 실습교과 등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및 산업안전보건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예정('18)

※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교육부 제공 매뉴얼 및 교수·학습자료 활용 가능

- 교육부는 특성화고 포털 하이파이브를 통해 분야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및 교수학습 자료/교재 제공
- www.hifive.go.kr 접속→[알림마당] 메뉴의 [자료실] 탭→[안전&현장실습] 탭 클릭 후 분야별 교수학습자료 또는 매뉴얼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하며 개별 학교는 이를 학생이 현장실습 실시 이전에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부는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원 연수 역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역시 현장실습 계획수립 및 실행에 참여하는 교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

구 분	교 직 원	학 생
대 상	- 특성화고(구. 종합고 포함), 마이스터고 취업담당 교직원	- 전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3학년 중 취업희망자
교육방법	- 집합연수	- PC기반 사이버 교육 및 일부 모듈 모바일러닝
교육횟수	- 15회(1차), 46회(2차)	- 1회
1회당시간	- 15시간(1박 2일)	- 18차시
기 간	- '17.5.19 ∽ 7.1 (3개월) : 591명(1차) - '17.10. ∽ '17.12. (3개월) : 2,509명(2차)	- '17. 4월∽10월 (6개월) : 90,000명(학생) ※ 교직원 2,000명 별도
교육내용	- 현장실습 관련 규정 및 우수사례 - 근로기준법 - 비정규직 -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 직장 내 산업안전·보건 및 예방 - 취업과 근로, 퇴직과 재취업 등 근로관계법 전반 - 기타 직장예절과 성희롱 예방 등

- 필요 시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등이 개발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 있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학생/교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및 교직원 대상 집합연수 제공
  - http://elti.koreatech.ac.kr/에서 과정 검색하여 수강 신청

< 직업윤리 교육 >

○ 개별 학교는 자체적인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에 대비하여 직장예절 및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기와 방법 설정

- 직장예절 및 직업윤리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장생활에 적합한 복장, 호칭, 언행 등과 시간관리 등 실습 중 실습생으로 지켜야 할 규칙,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소비자 교육임.
- 직장예절 및 직업윤리 교육은 현장실습 파견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육 시간은 정규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편성할 수 있으며 가능한 진로와 직업 또는 전공교과 등 정규교육과정을 활용한 사전교육을 권장함.

7 학습 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주요활동>

- **학습 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 사전에 교육기관·실습기업·실습생의 3자간 표준협약 체결
  -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실습시간 연장을 위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서면 확인 필수)
  - 야간·휴일의 실습시간 제외 여부 확인

주요 운영방안

○ **학교는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현장실습생과 실습기업이 참여한 표준협약 체결**

○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방안 :**

-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취지에 맞게 근로기준법 보호조항 등을 참고하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협약서 고시 주체 변경(고용노동부장관→교육부장관) 예정

-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전면 도입되는 2020년까지 새로운 학습 중심 현장실습과 기존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병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의한 학습중심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개정안)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현행)가 공존할 수 있음.

- 다만, 학습중심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개정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현행) 내용을 유지하면서 학습중심 내용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한 것임

- 따라서,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학습중심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개정안)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활용하며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전면 도입되는 2020년까지 사용할 계획

구분	학습 중심 현장실습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체결사항	학습 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개정안) 체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현행) 및 (사실상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

※ 학습 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개정안)의 미준수 및 위반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필요

관련자료

○ 학습 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안)

8 학습 중심 현장실습 실시

<주요활동>

- **(실습기업) 실습생 도착→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안전교육(집합교육) 실시→현장부서 배치→학습 중심 현장실습 실시 및 피드백**
- **(학교) 현장실습 순회지도,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탑재**
- **(학생) 현장실습 일지 작성**

주요 운영방안

< 실습생 도착 >

○ 실습기업 현장실습 담당자 및 현장실습생은 출근부 및 실습일지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학교 및 실습생은 실습기업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출근부 작성을 요청하여 매월 초 학교에 제출함
-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여 실습일지 작성 및 실습 종료 후 학교에 제출함

<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안전교육(집합교육) 실시 >

○ (실습기업) 오리엔테이션 운영시 유의사항

✤ 단순한 정보 나열, 동영상 상영 등은 피하자!

- 좋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현장실습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것
- 형식적인 오리엔테이션에 그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은 물론 실습에 대한 기대와 의욕이 꺾이기 쉬움
- 정성과 진심이 담긴 오리엔테이션이 앞으로의 실습기간을 원활하게 만듦

✤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 미성년자로서 처음 직장에 발을 내딛은 실습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함
- 매우 사소한 질문이라도 성심성의껏 응답하도록 함
-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응대하도록 함
- 실습기간 동안 질문이 발생하는 경우 찾아가야 할 사람을 알려주도록 함

✤ 자료를 제공하자!

- 실습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개월까지 진행됨
- 따라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항상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줌
- 예를 들어 직장윤리, 직장예절, 비상연락망, 실습생의 책임과 권리 등에 대한 사항을 수첩형태로 배포하도록 함 (* 참고: 고용노동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핸드북」)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기업용. 114쪽.

○ (산업체) 집합교육(기초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 오리엔테이션, 실무교육(OJT)와의 연결고리를 항상 염두에 두자!

- 종종 집합교육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음
- 현장실습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내용은 최종적인 교육목표에 정렬된 형태가 되어야 함
-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실무교육(OJT)과 겹치는 교육내용은 없는지, 연계되는 교육내용은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집합교육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별해내자!

- 오리엔테이션, 실무교육(OJT), 멘토링 등은 일종의 교육방법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 전체 교육내용 중 집합교육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효율적인 요소들을 뽑아서 집합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기업용. 117쪽.

< 현장부서 배치 >

○ 모든 교육이 종료하면 업무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현장에 배치

① 실습생 배치될 현장(작업장)에 사전 예고	교육담당자[1]
▼	
② 실습생에게 작업장의 특징, 수행 업무에 대해 소개	교육담당자[1]
▼	
③ 현장(작업장) 도착	교육담당자[1]
▼	
④ 현장(작업장) 관리자–실습생 대면, 인수인계[2]	교육담당자[1]
▼	
⑤ 현장근로자에게 실습생 인사 및 소개	현장관리자
▼	
⑥ 현장 소개, 안전수칙 설명, 안전보호장구 지급	현장관리자
▼	
⑦ 실습생 – 전담지도자 대면	현장관리자
▼	
⑧ 실습 시작(OJT 및 멘토링 동시 시작)	전담지도자

참고: 1) 별도 교육전담부서 없을 경우, 인사 · 교육팀, 총무 · 인사팀 등의 담당자가 역할 수행 가능
2) 인수인계는 교육담당자–현장관리자, 또는 교육담당자–전담지도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기업용. 118쪽.

< 순회지도 실시 >

○ **개별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일환인 순회지도는 현장실습 담당교사가 직접 실습업체를 방문하여 지도하며, 지도 항목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지도 결과를 산업체의 현장실습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현장실습 순회지도의 목적은 실습생의 실습상황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실습생 및 담당자와 상담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음.
- 학교는 실습업체별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수립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순회지도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구비함.
- 온라인 순회지도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되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오프라인 지도는 전체 실습생 및 실습업체 대상으로 실시함.

< 근로보호 조치 >

○ **순회지도 등을 통해 실제 실습이 실습협약과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을 저해할 요인이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습을 중단하고 고용부 등에 근로감독 요청 등 조치 실행**

- 협약 내용과 상이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경우 산업체와 재협의하여 시정을 요청하거나 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안전보건관리 및 근로자성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습을 중단하고 필요 시 근로감독 요청, 현장실습생은 타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복교 조치함.
- 현장실습생이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실습 중단을 요청한 경우 산업체와 협의한 후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교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복교사유서 등을 통해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함.
- 학생 복교를 고려하여 개별학교는 복교 및 현장실습 미파견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해야 함.

< 안전사고 조치 >

○ 개별학교는 산업재해로부터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실습 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실습생 및 학교별 현장실습 관련 보험 가입(현장실습 보험가입은 권장사항)

– 현장실습생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하여 당연가입 및 보상(2010.6.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12.4.1)으로 현장실습 중 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에 포함

–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체 기물파손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가급적 실습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하며, 경우에 따라 학생 개별적인 수준에서 배상책임이 포함된 단기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습종합보험: 학생이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을 받는 실습현장에서 실습 중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배상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고 보험기간은 통상 1개월에서 1년 사이임.

※ 기계작업을 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일부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상해보험과 같이 배상책임이 포함된 단기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학생은 적기에 치료를 받고 보고하며 학교 및 교육청은 현황을 파악하여 상급기관 보고 및 학생지원 실시

– 안전사고 발생 후 실습학생은 실습장의 책임자, 부모님과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시 치료를 받으며, 보고를 받은 관계자는 실습학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실습장의 책임자와 학교장, 담임교사 및 현장실습 담당교사는 교육청과 함께 해당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며 상급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함.

–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는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를 실시함.

[안전사고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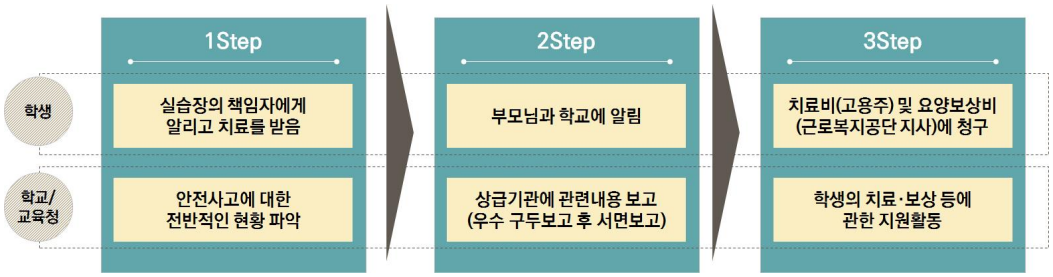

○ 실습장의 책임자, 학교장 및 담임/현장실습 담당교사는 현장실습생의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치료비 등에 대한 조치 실행

관련자료

○ 현장실습 출근부
○ 현장실습 일지
○ 현장실습 순회지도 체크리스트
○ 현장실습 순회지도(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서식예시 현장실습 출근부

1. 기본 사항

실습학생	_____과 3학년 ____반 ____번 성명: _____
실습업체명	
실습기간	

2. 출근 상황

20 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말 통계	출근		지각		현장실습 담당자 확인	(인)	
	결근		조퇴				

※ 현장실습 종료 후 우편 또는 FAX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FAX :
전화 :

OO고등학교장 귀하

서식예시 현장실습 일지

현장실습 일지

실습 담당자	결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장실습 학생: (인)					
근무시간	~	**담당업무**		**부서**	
실습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월**	- 회사의 조직 이해			
	화	- 제품생산과정에 대한 이해			
	수				
	목				
	금				
실습소감	실습 2주차로 회사의 제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제품생산에 대한 과정을 배우고 나니 A회사의 제품의 특성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제품생산에 있어 생산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습 애로사항	제품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타	생산과정에 대한 공정견학 일정이 다소 미루어져 구두로만 설명하여 안타까웠다.				
지도담당자 의견 및 평가	본격적인 OJT가 시작된 2주차이다. 현재까지는 이해도 빠르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다. OJT시 질문도 많이하고 적극적이라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겠단 생각이 든다.				

서식예시 현장실습 순회지도 체크리스트

영역	지도 내용	확인	
		Yes	No
현장실습 협약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의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계약내용과 달리 실습이 운영되고 있는가?		
	*** 표준협약서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		
현장실습 실태	*** 현장 실습생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① **현장실습 시간** 1일 ( )시간, 1주 ( )시간 ② **단순 근로 여부** 유 ( ) 무 ( ) ③ **휴일 및 야간 실습** 유 ( ) 무 ( ) ④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유 ( ) 무 ( ) ⑤ **위반사항**: 없음 ( ) 시간초과 ( ) 야간근무( ) 휴일근무 ( ) 생리휴가 미실시 ( ) 유해위험업무 ( ) 성희롱 등 ( ) 폭행 등 ( ) – 조치: 시정권고 ( ) 근로감독 요청 ( ) 복교 ( ) – 결과: 시정완료 ( ) 근로감독 실시 ( ) 복교 ( )		
학생 만족도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및 기업 만족도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불만족(1)	
현장 실습생	1. 현장실습생은 성실하게 실습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은 산업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생에게 애로사항이 있는가?		
	4. 현장실습 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5. 현장실습생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6. 현장실습생은 사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현장 실습 운영	7. 현장실습이 본래의 목표와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가?		
	8. 현장실습생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9. 현장실습 산업체 고용주가 현장실습에 대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10. 산업체 현장실습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11. 현장실습생의 성취도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12. 현장실습 환경 및 여건은 적절한가?		
기타의견(문제점, 애로사항 등)			

서식예시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

결재	과부장	교감	교장

산업체명		순회지도일시	. . . ~ . . .
주 소		전화번호	

【현장점검 내용】			
항목	**상**	**중**	**하**
관련 법령 및 협약서 준수			
복지 및 후생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			
현장실습 현장의 안전			
실습생 건강			
취업연계 가능성			
【순회지도 평가내용】			
개인별 평가항목	**우수 (9~10)**	**보통 (7~8)**	**미흡 (1~6)**
근무성실성			
업무 파악			
실습일지 작성			
사규 및 안전수칙 준수			
[평가] 각자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오른쪽 서식 평가란에 기록한다.			

연번	**학과**	**반**	**번호**	**성 명**	**평 가**
1					
2					
3					
4					
5					
6					
7					
8					
9					
10					

<조치사항>

상기와 같이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성명: ㊞

9 학습 중심 현장실습 종료 및 복귀

<주요활동>
• (산업체) 현장실습 결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학교에 제출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증 발급

관련자료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기업용)

서식예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

이름		학과명	
실습기관명		기업담당자 확인	(인)
실습기간			
실습개요 및 목표			
실습내용			
실습 전후의 차이점			
향후 진로계획			
건의사항			

서식예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기업용)

□ 실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 )일간

□ 현장실습생 명단

번호	학교명	학과명	이름	배치부서	지도담당자
1					
2					
…					
총 ○○개 학교, ○○명					

□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분	주차	실습내용	실습방법	담당자	관련 NCS 능력단위
오리엔테이션		-			
기초교육		-			
실무교육		-			
평가		-			

□ 현장실습 결과

실습이수	이수율	중도탈락자
	총 ○○명 중 ○○명 (%)	총 ○○명 (사유:)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결과		
개선 필요사항		

서식예시 현장실습 이수증(예시)

현장실습 이수증

실습생	학과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실습내용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위 학생은 당 업체에서 위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실습기업명 : **(직인)**

현장실습담당자 : 직위 **이름** **(인)**

○○고등학교장 귀하

⑩ 현장실습 보고회 및 평가 실시 (12월)

<주요활동>

- **개인별 현장실습 결과보고회 개최**
- **학생 및 산업체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
-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 평가 → 기업 사후관리 및 개선안 수립에 활용**

주요 운영방안

○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확인(학생 만족도, 권익침해 등)하고 차년도 환류(기업관리, 프로그램 수정 등) 등을 위해 3학년 동계방학 전에는 반드시 학생을 학교로 복귀시켜 현장실습 보고회 등을 실시**

< 현장실습 종료후 프로그램(예시) >

현장실습 점검	취업지원
– 보고회, 실습과제 발표회 등을 통한 느낀점 공유 및 평가 –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전공과 관계여부, 강제적인 현장실습 실시 여부 등) – 학생 상담 및 생활기록부 입력	– 현장실습 기업으로 희망 시 해당기업에 취업 지원 – 취업희망 학생 대상 지속적인 구직활동지원(취업지원센터, 지방고용센터 등) – 취업한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 실시

관련자료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서식예시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table>
<tr><td>소 속</td><td colspan="5">○○고등학교 ○○과 ○○번</td><td colspan="2">이름:</td></tr>
<tr><td colspan="7">평 가 표</td></tr>
<tr><td>평가영역</td><td colspan="2">평가항목</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득점</td><td rowspan="11">* 평가항목의 배점 항에 ○표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 )/100</td></tr>
<tr><td rowspan="4">실습과제 수행</td><td>1</td><td>관련지식</td><td>10</td><td>9</td><td>8</td><td rowspan="4">/40</td></tr>
<tr><td>2</td><td>무선통신망 운용 지원
(2002020309_14v2)</td><td>10</td><td>9</td><td>8</td></tr>
<tr><td>3</td><td>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2002020310_14v2)</td><td>10</td><td>9</td><td>8</td></tr>
<tr><td>4</td><td>무선통신망 장비 조립
(기업특화교육)</td><td>10</td><td>9</td><td>8</td></tr>
<tr><td rowspan="3">태도</td><td>1</td><td>성실성, 책임감</td><td>10</td><td>9</td><td>8</td><td rowspan="3">/30</td></tr>
<tr><td>2</td><td>협동심</td><td>10</td><td>9</td><td>8</td></tr>
<tr><td>3</td><td>사규 및 직장예절 준수</td><td>10</td><td>9</td><td>8</td></tr>
<tr><td rowspan="3">안전관리</td><td>1</td><td>안전관리 숙지</td><td>10</td><td>9</td><td>8</td><td rowspan="3">/30</td></tr>
<tr><td>2</td><td>안전수칙 이행</td><td>10</td><td>9</td><td>8</td></tr>
<tr><td>3</td><td>장비 및 기구정돈</td><td>10</td><td>9</td><td>8</td></tr>
<tr><td rowspan="2">출결</td><td>결근 일수</td><td colspan="4">일</td><td>/100</td><td>총점:( )/100</td></tr>
<tr><td colspan="7">*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3일은 결근 1일로 처리</td></tr>
<tr><td>총점</td><td colspan="7">(실습과제수행+태도+안전관리)점수×80% + 출결점수×20% = ( )/100</td></tr>
<tr><td colspan="8">기간 20 . . ~ 20 . .</td></tr>
<tr><td>실습 일수</td><td>일</td><td>결근 일수</td><td>일</td><td>사고
질병</td><td>일
일</td><td>지각 일수</td><td>일</td><td>조퇴 일수</td><td>일</td></tr>
<tr><td colspan="8">회사명: 평가자 직위: 성명: (인)</td></tr>
<tr><td colspan="8">OO고등학교장 귀하</td></tr>
</table>

붙임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안)

<붙임>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_____회사대표(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_____학교학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____학교장(이하“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현장실습 기간)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___. ___. ___. ~ 20___. ___. ___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기간은 “현장실습생”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 (현장실습 장소) 현장실습은 “사업주”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 “현장실습생”이 합의하는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5조 (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사업주”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 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및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실습 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___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일은 ___시간)으로 하되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여성과 미성년자의 특별보호) ① (“현장실습생”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업무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수당지급일 : 매월 ____일
※ 수당액 : _____원
※ 지급방법 : □ 은행지급(계좌번호 : _____) / □ 직접지급
※ 산정기간 : 당월 일부터 당(익)월 일까지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2조 (복리후생)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3조 (현장실습의 평가 및 열람) ① “사업주”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 통보한다.

②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생”이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실습 평가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5조 (재해보상)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6조 (상벌)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그 내용을 “현장실습생”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 (복교)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협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여 복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에게 복교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사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 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현장실습중단 방지)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취업) “사업주”는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료증명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이후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2조 (준용) 본 협약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며 이 협약서에 없는 조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업주”,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사업주)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 전후비교표

구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안)
목적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회사대표(이하"사업주"라 한다)와 학교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_____ 회사대표(이하"사업주"라 한다)와 _____ 학교학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____학교장(이하"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신설)	**제2조 (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기간	**제2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 . . . ~ 20 . . .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사업주"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장실습 기간)**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___. ___. ___. ~ 20___. ___. ___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기간은 "현장실습생"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 (현장실습 장소)** 현장실습은 "사업주"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 "현장실습생"이 합의하는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실습방법	**제3조(현장실습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사업주"가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사업주"와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사업주"의 산업	**제5조 (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사업주"가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안)
	현장시설에서 현장 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합의로 그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1월에 1일 이상 "현장실습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 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업의 의무	**제4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교육과 근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안)
실습생의 권리	**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실습생의 의무	**제6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③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④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및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실습 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실습 시간과 휴식	**제7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__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일은 __시간)으로 하되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__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일은 __시간)으로 하되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구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안)
여성 및 미성년자 보호	**제8조(여자와 미성년자의 특별보호)** ① ("현장실습생"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업무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여성과 미성년자의 특별보호)** ① ("현장실습생"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업무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
현장실습 수당 및 복리후생	**제9조(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____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연장현장실습시간(제7조제1항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__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 - 다 음 - ■ 20__. __. __. ~ 20__. __. __. 매월(일) _____원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정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1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수당지급일 : 매월 ____일 ※ 수당액 : _____원 ※ 지급방법 : □ 은행지급 (계좌번호 : _____) / □ 직접지급 ※ 산정기간 : 당월 __일부터 당(익)월 __일까지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0조(복리후생)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2조 (복리후생)**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구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안)
현장실습 평가	**제11조(현장실습의 평가)** "사업주"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 통보한다.	**제13조 (현장실습의 평가 및 열람)** ① "사업주"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 통보한다. ②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생"이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실습 평가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안전·보건 조치	**제12조(안전·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4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재해보상	**제13조(재해보상)**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5조 (재해보상)**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상벌	**제14조 (상벌)**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징계결과를 "현장실습생"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거나 "사업주"가 별도로 정하여 현장실습계약서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 (상벌)**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그 내용을 "현장실습생"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구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안)
복교	(신설)	**제17조 (복교)**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협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여 복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에게 복교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사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실습내용 변경	**제15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 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습계약 해지	**제16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__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삭제)
실습중단 방지	**제17조(현장실습중단 방지)**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현장실습중단 방지)**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	**제18조(취업)** "사업주"는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취업)** "사업주"는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안)
수료 증명서	**제19조(수료증명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사업주"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현장실습생"이 이미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현장실습생"에게 교부한다.	**제21조 (수료증명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이후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준용	**제2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 (준용)** 본 협약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며 이 협약서에 없는 조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특례조항	**제21조(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	(삭제)